#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183

발의연월일: 2022. 4. 11.

발 의 자:이정문・김병기・김진표

김철민 • 문진석 • 민형배

박상혁 · 서영석 · 신동근

이광재 • 이성만 • 이탄희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신고로 인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회복되거나 증대된 경우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부패행위 신고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에 공공기관의 이익 증대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신고제도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익신고 또한 부패행위 신고와 동일하게 공공기관의 수입이 회복되거나 증대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 등).

한편, 공익신고자 등에게 지급되는 구조금의 경우 긴급한 상황에서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이전에 구조금을 먼저 지급할 수 있도록하고 있으나, 이때에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지급결정 절차를 거쳐야 해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실정임.

이에 긴급구조금의 지급 주체를 현행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변경하여 구조금의 지급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가목, 제26조 및 제27조제2항 등).

#### 법률 제 호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가목 중 "공공기관"을 "공공기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공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를 "공공기관의"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관련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및 그에 관한 법률관계의 확정을 이유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정한다)"를 "해당 공공기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 1호가목 중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 및 같은 호 다목에따른 기관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단서 중 "경우에는"을 "경우 위원장은"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는"을 "공공기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가"를 "공공기관이"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 및 제26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하는 공익신고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내부 공익신고자"란 다음	7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공익신고자를 말한다.	
가. 피신고자인 <u>공공기관</u> , 기	가 <u>공공기관</u>
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	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던 자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u>같다)</u>
나.•다. (생 략)	나.•다. (현행과 같음)
제26조(보상금) ① 내부 공익신고	제26조(보상금) ①
자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u>국가 또는</u>	<u>공공기관</u>
<u>지방자치단체</u> 에 직접적인 수입	
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	
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	
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1. ~ 5. (생략)
- ② (생 략)
-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⑤ (생 략)
- ⑥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보 상금 지급결정이 있은 때에는 즉시 이를 보상금 지급 신청인 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지방자 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 복이나 증대 및 그에 관한 법 률관계의 확정을 이유로 보상 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정한다) 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의2(포상금 등) ① 위원회 전 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u>.</u>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④·⑤ (현행과 같음)
6
해당 공공기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중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 및 같은 호 다목에 따
른 기관은 제외한다 <u>)</u>
<u>.</u>
세26조의2(포상금 등) ①
пдодета о п о / Ф

되는 사유로 현저히 <u>국가 및</u>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 1. ~ 4. (생략)
- ② (생략)

제27조(구조금) ① (생 략)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할수 있다. 다만, 위원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있다.
- ③ ~ ⑤ (생 략)
- 제29조(보상금등의 환수 등) ① (생 략)

② 위원회로부터 제26조제6항

	_0 0 / [ 년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	27조(구조금) ① (현행과 같음)
·	②
	<u>경우</u>
	<u>위원장은</u>
	<u>.</u>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	29조(보상금등의 환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에 따라 보상금 지급결정을 통지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위원회가 보상금 지급 신청인에게 지급한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 상금등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 과 제2항에 따라 보상금을 상 환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납부기한 또는 상환기간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거나 상환하 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u>공공기관은</u>
,
③
<u>공공기관이</u>